

##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문

우리 동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,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(강제처리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(자동차의 강제처리) 제2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거 강제 처리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압류·저당권자는 공고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신고하시기 바라며, 아래 기간 내 필요한 조치가 없을 때에는 강제처리(직권폐차)됨을 알려드립니다.

가. 대상차량 : 96가1669(코란도-벤)

나. 공고기간 : 2020. 6. 5. ~ 6. 14.

다. 강제처리(폐차)일시 : 2020. 6. 14. 이후

라. 대상차량 방치 장소 : 경주시 외외1길 166(우신정비공장)

마. 문 의 처 : 선도동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(☎ 054-779-8421)

경 주 시 선 도 동 장

